

고교-대학 연계 심화과정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학칙 제36조2에 의거 “고교-대학 연계 심화과정(University-level Program)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고교-대학 연계 심화과정(University-level Program)이라 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제3조(수업일수) ① 수업일수는 학기 중 운영인 경우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, 방학 중 운영인 경우에는 매학기 3주 이상으로 한다.

② 학기 중 수업은 1주일에 1일, 방학 중 운영 및 특별학기는 1주에 5일을 초과하여 수업할 수 없다. 단, 보충강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, 시험시간도 수업시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.

③ 과목당 1일 수업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.

제4조(신청자격) ① 고등학교 재학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, 해당 강좌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야 한다.

② 3학년 재학생 중 타 대학에 입학 예정인 자는 제한 할 수 있다.

제5조(수강신청) ① 고교-대학 연계 심화과정(UP)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은 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수강신청을 한 후 해당 수강신청내역서를 출력하여 학교장의 추천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신대학교 교무과에 서류를 접수한다.

② 수강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출석시간수가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하며, 최종성적을 C이상 받은 경우 이수증을 발급한다.

③ 수강료는 수입자부담원칙으로 구체적인 액수는 교육부(대학교육협의회)의 기준에 따른다.

제6조(학점인정 및 성적처리) ① 고교-대학 연계 심화과정(UP)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우리 대학교에 입학 할 경우 취득학점을 일반교양과목 1강좌 2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취득한 학점은 성적증명서에 P(Pass)표기하며, 해당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, 졸업학점에 포함 한다.

제7조(수업료) 고교-대학 연계 심화과정(UP)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최소 운영 경비는 학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